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84
------	------

제출일자 : 2021. 5. 28.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1. 4. 30. ~ 2021. 5. 20.): 별도의견 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첨부
- 4) 규제사전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과)
- 5)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민원감사담당관)
- 6)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여성가족과)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직윤리 강화와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정비

- 1)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현행
“3명” 에서 “5명” 으로 2명 증원(안 제2조제1항, 2항)
- 2)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법관” 을 “판사변호사검사” 로 변경
(안 제2조제1항제1호)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 띄어쓰기 등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21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따라서서울특별시”를 “따라 서울특별시”로, “관한사항”을 “관한 사항”으로, “필요한사항”을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과부위원장”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5명”을 “7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3명의 위원은 법관”을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로, “사람중”을 “사람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속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1명”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속 공무원(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3명”을 “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추천을받아야”를 “추천을 받아야”로 한다.

제3조의2 중 “기준을위원회”를 “기준을 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하되,1차”를 “하되, 1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에도불구”를 “규정에도 불구”로, “임명당시”를 “임명 당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임기는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을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직무를 대행한다”를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위원회의 회의등)”을 “(위원회의 회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재적위원수의계산”을 “재적위원 수 계산”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2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제7조의 제목 “(위원회의 간사등)” 을 “(위원회의 간사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위원회” 를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 로, “둘 수 있다.” 를 “둔다.”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간사는 민원감사담당관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위원회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 중 “소속공무원” 을 “소속 공무원” 으로, “위원장·부위원장·위원에게는” 을 “위원장, 위원에게” 로, “수당,여비” 를 “수당, 여비” 로 한다.

제9조 중 “위원회의규정” 을 “위원회의 규정” 으로 한다.

제10조 전단 중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장” 은” 을 “장” 은 ”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에 <u>따라서서울특별시</u>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u>관한사항</u> 과 법 시행에 <u>필요한사항</u>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따라 서울특별시</u> ----- ----- ----- <u>관한 사항</u> ----- <u>필요한 사항</u> ----- -----.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u>위원장과부위원장</u> 각 1명을 포함한 <u>5명</u> 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서 신설>	제2조(구성) ① ----- ----- ----- <u>위원장과 부위원장</u> ----- ----- <u>7명</u> ----- ----- ----- ----- -----. -----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1. <u>3명</u> 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u>사람</u> 중에서 위촉한다.	1. <u>5명</u> 의 위원은 <u>판사·검사·변호사</u> ----- ----- ----- ----- <u>사람</u> 중 ----- -----.

2. 2명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서울특별시금천구 소속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이 호선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생략)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받아야 한다.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구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

2. -----

-----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속 공무원(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 1명-----
-----.

②-----
-----.

1. ----- 5명-----
-----.

2. (현행과 같음)

③ -----
----- 추천을 받아야 -----.

제3조의2(심사기준) -----
----- 기준을 위원회-----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 하되, 1차-----
-----.

②-----

기는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생략)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① (생략)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규정에도 불구하고-----

----- 임명 당시-----
-----.

③-----
-----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
 퇴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
 사의퇴의 승인

2. 법 제8조2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
 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에 해
 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
 하게 하기 위하여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사무직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8조(수당)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
 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
 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
 급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
 퇴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
 사의퇴의 승인

2. 법 제8조2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
 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에 해
 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현행과 같음)

④-----
 ----- 재적위원 수 계산-----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 사실조사 등을 하
 기 위하여 위원회-----
 ----- 둔다.

②간사는 민원감사담당관으로 하
 며, 사무직원은 위원회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수당) 소속 공무원-----
 ----- 위원장, 위원에게 -----
 ----- 수당, 여
 비 -----
 -----.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
 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
 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규정
 으로 정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
 항 이외의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시행
 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
 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
 은“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
 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로 한다. <후단 신설
 2012.7.17.>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

 ----- 위원회의 규
 정-----.

제10조(준용) -----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 -----
 ----- 장”은 “-----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번 개정되는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조정·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민원감사담당관 조사팀 권슬아
연 락 처	2627 - 1185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25., 2012. 7. 17.>

제2조(구성) ①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중에서 위촉한다.
2. 2명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서울특별시금천구 소속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2. 7. 17.>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이 호선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7.>

③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받아야 한다. <개정 2012. 7. 17.>

제3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12. 7. 17.>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07. 7. 25., 2012. 7. 17.>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12. 7. 17.>
3. 삭제 <2007. 7. 25.>
4.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개정 2012. 7. 17.>
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07. 7. 25., 2012. 7. 17.>

②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17.>

1.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 7. 25., 2012. 7. 17.>
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 7. 25.>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 7. 17.>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구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7. 17.>

③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7. 17.>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 7. 17., 2020. 12. 31.>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 7. 17.>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 7. 25., 2012. 7. 17.>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12. 7. 17.>
2. 법 제8조2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 <개정 2012. 7. 17.>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12. 7. 17.>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07. 7. 25., 2012. 7. 17.>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2. 7. 17.>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개정 2012. 7. 17.>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2. 7. 17.>

제7조(위원회의 간사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사무직원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8조(수당)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 7. 17.>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 7. 17.>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개정 2007. 7. 25., 2012. 7. 17.><후단 신설 2012.7.17>

관 계 법 령

공직자윤리법

-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④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의 자격,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6.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법과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